

공공구매책임자지정서

1. 지정번호 : 제 호
2. 소 속 :
3. 성 명 :
4. 주 소 :

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 제17조의2 제1항 및 「신제품 (NEP) 지정 및 구매촉진에 관한운영요령」 제25조의2 제3항에 따라 귀하를 공공기관의 지정신제품 관련 업무에 대한 공공구매책임자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산업통상부장관(직인)